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금융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금리, 고물가 등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자 함

아울러,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출연금을 감액하여 정책서민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심의 요청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연이율 1만분의 3”을 “연이율 10만분의 30(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연이율 10만분의 35,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금융회사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연이율 1만분의 3”을 “연이율 10만분의 30(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“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”을 “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(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금액에서 별표 1의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감액한 금액)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출금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신용보증금액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제4항 및 별표
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
용한다.

[별표 1의2] <신 설>

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액 산정 시 감액하는 금액(제42조제4항
관련)

다음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 제2호의 금액을 감액

1. 출연금 납부 월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신용보증 공급 실적 평가 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금융회사

2.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

가. 제42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별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
× (제42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별 출연비율 - 10만분의 30)

나.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에 1천분의 5를 곱한 금액

비고 : 금융회사의 신용보증 공급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은 신용보증금액, 출연기준대출금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보완계정의 조성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율에 따른 금액”이란 출연 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<u>연이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</u> 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」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 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 잔액에 <u>연이율 1만분의 3</u> 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~ 3. (생 략) ④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”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(이하 “신용 보증금액”이라 한다)의 월중 평 균잔액에 <u>별표 1의 출연금 요율</u> <u>을 곱한 금액</u> 을 말하며, 같은 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율”이란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말한다. ⑤ ~ ⑧ (생 략)	제42조(보완계정의 조성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연이율 10만분의 30(2025년 12</u> <u>월 31일까지 법 제47조제1호에</u> <u>따른 금융회사는 연이율 10만분</u> <u>의 35,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</u> <u>금융회사는 연이율 10만분의 45</u> <u>로 한다)</u> -----. ---- <u>연이율 10만분의 30(2025</u> <u>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</u> <u>분의 45로 한다)</u>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</u> <u>곱한 금액(2025년 12월 31일까</u> <u>지 이 금액에서 별표 1의2에 따</u> <u>라 산출된 금액을 감액한 금액)</u> -----. 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614